

## 1. 개정이유

- 가. 정부관리양곡 공공용 매입자격기준에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추가하여 복지용쌀 지원근거를 명확화하고,
- 나. 국민권익위원회 「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」의 권고사항에 부합하도록 행정제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국민의 부당한 권익 침해를 예방하며,
- 다. 양곡가공업 시설기준에 ‘쌀가루’ 제분업을 구분 명시하여 시설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함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정부관리양곡 공공용 매입자격기준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추가(안 별표1)
  - 1)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‘11년부터 ‘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’으로 한부모 가구 등도 포함하여 정부양곡을 지원해오고 있으나,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매입자격기준에는 포함되어있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함
  - 2) 이에 따라,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2]의 공공용 매입자격기준에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추가함
- 나. 행정제재 가중처분을 적용하기 위한 차수 규정 및 누적회차 적용 규정 신설(안 별표2, 별표5)
  - 1) 국민권익위 「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」(‘21.6)에 따라 정부양곡 매입자격 제한 등 가중 행정처분 누적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
- 2) 현재 위반행위 횟수 누적(1~3회)에 따라 가중처분을 차등 적용하고 있으나,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다르게 처분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가중처분 적용시점 및 차수 적용기준을 추가하여 명확히 함
- 다. 양곡가공업 중 ‘쌀가루’ 제분업에 대한 시설 기준 신설(안 별표3)
- 1)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3]에 양곡 제분업 시설기준을 ‘밀가루’와 ‘옥수수나 그 밖의 곡분’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, ‘쌀가루’는 ‘옥수수나 그 밖의 곡분’ 분류에 포함되나, 현실 여건상 ‘쌀가루’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구분하여 명시할 필요가 있음
  - 2) ‘쌀가루’ 제분업 시설기준을 ‘옥수수나 그 밖의 곡분’과 구분하여 별도로 신설하고, 분쇄장치와 체장치만 갖추도록 함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관계부처 등 합의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붙임(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)

##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[별표 1] 3호 나·다목을 다·라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

[별표 2] 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(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적발한 날로 한다.

[별표 2] 1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[별표 3] 1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	시설기준
제분업	쌀가루	가. 분쇄장치 나. 체장치

[별표 5] 1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									
<p>[별표 1]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(제1조의3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용도</th> <th style="width: 65%;">매입 자격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3. 공공용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                   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  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나.~다. (생략)                 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용도	매입 자격기준	비고	3. 공공용	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 <u>&lt;신 설&gt;</u>  나.~다. (생략)		<p>[별표 1]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(제1조의3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용도</th> <th style="width: 65%;">매입 자격기준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3. 공공용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top;">                    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                      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다.~라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용도	매입 자격기준	비고	3. 공공용	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 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다.~라. (현행과 같음)	
용도	매입 자격기준	비고											
3. 공공용	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 <u>&lt;신 설&gt;</u>  나.~다. (생략)												
용도	매입 자격기준	비고											
3. 공공용	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 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다.~라. (현행과 같음)												
<p>[별표 2]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(제1조의4 관련)</p> <p>1. 일반기준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</p>	<p>[별표 2] 정부관리양곡의 매입자격 제한기준(제1조의4 관련)</p> <p>1. ----</p> <p>가. 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<u>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</u></p>												

<신 설>

다. (생 략)

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(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)를 적발한 날로 한다.

<단서신설>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

[별표 3]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 
(제5조 관련)

1. 제분업 및 제조업

구 분		시설기준
제분업	밀가루	가. 고르는 장치: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. 분쇄장치: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0.9톤 이상인 경우에 설치 다. 체장치: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0.9톤 이상인 경우에 설치 라. 시험장치: 자체 품질관

[별표 3] 양곡가공업의 시설기준  
(제5조 관련)

1. 제분업 및 제조업

구 분		시설기준
제분업	밀가루	가. 고르는 장치: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. 분쇄장치: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0.9톤 이상인 경우에 설치 다. 체장치: 해당 시설의 처리능력이 시간당 0.9톤 이상인 경우에 설치 라. 시험장치: 자체 품질관

		리에 필요한 회분·단백질 및 사분의 분석시설
	<신설>	<신설>
	옥수수나 그 밖의 곡분	가. 고르는 장치: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. 분쇄장치 다. 체장치
제조업	(생략)	(생략)

2. 도정업  
(생략)

[별표 5]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제8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~나. (생략)

<신설>

다. (생략)

		리에 필요한 회분·단백질 및 사분의 분석시설
	쌀가루	가. 분쇄장치 나. 체장치
	옥수수나 그 밖의 곡분	가. 고르는 장치: 원료 고르는 장치 1벌 이상 나. 분쇄장치 다. 체장치
제조업	(현행과 같음)	(현행과 같음)

2. 도정업  
(현행과 같음)

[별표 5] 양곡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제8조 관련)

1. ----

가~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라. (현행 다목과 같음)